

「직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2. 13. 개정 판 (시행 2023. 1. 1.) → 2023. 9. 4. 개정 판 (시행 2023. 9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68/compare?from=1413&to=145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2:18:2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교목처)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를 둔다.	제12조(교목처)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, <u>선교사훈련센터</u> 를 둔다. <개정 2023-09-04>
제13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, 교원인사업무, 시간강사업무, 학적, <u>Su-innovation academy</u> 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.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, <u>SU-innovation Academy</u> 를 둔다.	제13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, 교원인사업무, 시간강사업무,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. <개정 2023-09-04>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을 둔다. <개정 2023-09-04>
제15조(기획처)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, IR센터 업무,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<개정 2022-02-14>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, IR센터,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. <개정 2022-02-14>	제15조(기획처)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, <u>평가</u> 및 예산에 관한 업무, IR센터 업무,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<개정 2022-02-14>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, IR센터,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. <개정 2022-02-14>
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, 건강증진센터, <u>시뮬레이션센터</u> 를 둔다. <개정 2023-02-13>	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, 건강증진센터를 둔다. <개정 2023-09-04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세계선교센터"를 "세계선교센터, 선교사훈련센터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학적, Su-innovation academy"를 "학적"으로 하고, "관장한다."를 "관장한다. <개정 2023-09-04>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, SU-innovation Academy"를 "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기획 및"을 "기획, 평가 및"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건강증진센터, 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"를 "건강증진센터를 둔다"로 하고, "<2023-02-13>"를 "<2023-09-04>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